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29
----------	-------

발의연월일 : 2022. 4. 28.

발 의 자 : 홍문표 · 김상훈 · 김선교
김희곤 · 박형수 · 성일종
윤재갑 · 이달곤 · 이만희
이명수 · 이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연구와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등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잠복기가 30년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조사·관리 이외에도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한 진찰 등이 필요하므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과 같이 석면환경보건센터에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4호 중 “업무”를 “업무(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7조의2제4항”을 “제4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석면 환경보건 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2(석면 환경보건 센터의 지정 등) ①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u>업무</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 ----- ----- <u>업무(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포함한 다)</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7조의4(석면 환경보건 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47조의4(석면 환경보건 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47조의2제5항-----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